##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4582

발의연월일: 2022. 1. 26.

발 의 자: 송갑석 · 오영환 · 이용빈

윤영덕·이동주·서삼석

전용기 · 이개호 · 조오섭

양정숙 · 신영대 의원

(11일)

####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에게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전기판매사업자 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사용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점검업무를 이원화 하고 있어 인력 및 점검장비를 중복 투자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어려워 전 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일관성 확보가 필요함.

또한, 사용전점검 비용은 그동안 정부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액지원해 오고 있어 전기요금의 일부(3.7%)를 재원으로 하는 기금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자는 의견이 있고, 시공업체들은 현장전기설비 시공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불필요한 인력·비용이 소요되는 사례 등이 있음.

이에 사용전점검 업무를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여 점검이력관리 강화 및 업무 효율성 등을 제고하고, 또한 전기설비 시공 품질 향상 및 기금활용 내실화 등을 위해 점검비용을 수익자부담으로 전환하려 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기관 일원화를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2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10항).
- 나.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용전점검 비용을 수익자부 담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수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42조제1항제1호 의2 신설).

법률 제 호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점검 (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를 각각 "안전공사"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9항"을 "제6항부터 제9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

##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            |                     |
| 기설비가 「전기사업법」제67조           |                     |
| 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          |                     |
| 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          |                     |
| 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                     |
|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                     |
|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                     |
|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           |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
| 하여금 점검(전기판매사업자는            | <u>하여야 한다</u>       |
| 사용전점검 중 대통령령으로 정           |                     |
| 하는 전기설비의 경우에 한정한           |                     |
|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도록         |                     |
| <u>하여야 한다</u> . 다만, 주거용 시설 |                     |
| 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                     |
| 정기적으로 점검(이하"정기점검"          |                     |
| 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소유자          |                     |
|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           |                     |
| 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          |                     |
| 하지 아니하다.                   | <u>.</u>            |
| ②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           | ② <u>안전공사는</u>      |
| <u>는</u> 제1항 본문에 따른 점검 결과  |                     |
| 일반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           |                     |
|                            |                     |

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사항을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생략)
- ④ <u>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u> 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점 검 또는 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⑤ ~ ⑨ (생 략)
- ①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 제42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 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 (생 략)

< 신 설 >

2. ~ 4. (생략)

| ,        |                          |
|----------|--------------------------|
| ]        |                          |
| ]        |                          |
|          | <b>.</b>                 |
|          | ③ (현행과 같음)               |
| }        | ④ <u>안전공사는</u>           |
| }        |                          |
| }        |                          |
| <u> </u> |                          |
| ŧ        |                          |
|          | <b></b>                  |
|          | ⑤ ~ ⑨ (현행과 같음)           |
| <u>-</u> | ⑩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는          |
| 1        | <u>제6항부터 제9항</u> 까지의 규정을 |
|          | 준용한다                     |
| L        |                          |
|          | <u></u>                  |
| ]        | 제42조(수수료 등) ①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
|          | 1의2.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     |
|          |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을 받        |
|          | <u>으려는 자</u>             |
|          | 2. ~ 4. (현행과 같음)         |